



Thailand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태국편 (2nd edition)

201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태국편(2nd edition)



201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태국법 등을 2016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태국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해외세정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영국에 대한 연구보고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2월

국제조세관리관



I. 총 론	1
1. 국가개황	2
2. 조세체계	5
3. 최근 세제개혁	9
II. 조세제도	13
1. 법인세	14
2. 개인소득세	37
3. 간접세와 기타 제세	45
4. 국제조세	54
III. 국세행정 및 절차	61
1. 개 요	62
2. 세금 신고 및 납부	63
3. 태국의 세무조사	65
4. 납세불복 제도	66
5. 기 타	67
6. 이중 과세 방지 협약	68
IV. 부 록	73
한·태국 조세조약	74

I. 총론

1. 국가개황 / 2
2. 조세체계 / 5
3. 최근 세제개혁 / 9



1 국가개황



가. 일반사항

국명	태국 (The Kingdom of Thailand)
위치	동남아시아(북위 : 5.37 - 20.27도, 동경 : 97.22 - 105.37도)
면적	514천 km ² (한반도의 약 2.3배)
기후	열대몬순기후(건기 : 11월-2월, 우기 : 7월-10월, 열대기후 : 3월-6월)
수도	방콕 (Bangkok)
인구	6,573만 명 (2015)
주요도시	방콕(570만명), 치앙마이(173만명), Nakhon Ratchasima(263만명), Nakorn Srithammarat(155만명), Ubon Ratchathani(186만명), Udon Thani(157만명)
민족(인종)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
언어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교	소승불교(94.6%), 회교(4.6%), 기독교(0.7%), 기타(2%)
건국일	1782년 4월6일(현 왕조 출범일)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국왕 - Rama IX (Bhumibol Adulyadej) / 9대왕, 1946.5.5 즉위 총리 · 프라윗 찬오차(2014. 8월 취임)

자료원 : EIU 자료(2015), 태국중앙은행(2015), 인구 : 태국 통계청

나. 주요 경제지표

G D P	US\$ 3,975억(2015)
경제 성장률	0.1%(2011), 6.5%(2012), 2.9%(2013), 0.8%(2014), 2.8%(2015)
1인당 GDP	US\$ 6,047(2015)
실업률	0.7% (2015)
물가 상승률	-0.9% (2015)
화폐단위	Baht, Satang (1/100바트)
환율	\$1=Baht 34.25 (2015년 연평균 환율)
외채	미\$ 1320억 (2015년 말 기준)
외환보유고	미\$ 1565억 (2015년 기준)
산업구조	농업 (10.5%), 제조업 (36.8%), 서비스업(52.7%)
교역규모	US\$ 2,142억(수출), US\$ 2,026억(수입), 무역흑자 US\$116억(2015)
교역품	수출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공식품 등 수입 : 원유,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자료원 : EIU 자료(2015), 태국경제사회개발원(2015)

다. 한-태국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수립(1959) ○ 무역협정(1961.9), ○ 무역전시품 면세통관협정(1963.5) ○ 항공협정(1967.7) ○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1967.10) ○ 이중과세방지협정(1974.8) ○ 운수소득 면세협정(1977.10) ○ 사증면제협정 (1981.11) ○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6) ○ 태국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발효(2010) ○ 수송자 이송조약(2012.2) ○ 민상사 사법공조조약(2013.5)
------	---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82억 2천(우리나라 수출) - US\$ 53억 2천(우리나라 수입) - 무역흑자 US\$ 28억 6,800만 ○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80억 7천(우리나라 수출) - US\$ 52억 3천(우리나라 수입) - 무역흑자 US\$ 28억 4천 ○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75억 9천(우리나라 수출) - US\$ 53억 4천(우리나라 수입) - 무역흑자 US\$ 22억 5천 ○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63억 6천(우리나라 수출) - US\$ 48억 5천(우리나라 수입) - 무역흑자 US\$ 15억 8천
교역품	<p>(수출) 컬러TV부품, 휴대용전화기, 스테인레스 강열강판등</p> <p>(수입) 기타직접회로반도체, 천연고무, HDD, 원유, 새우</p>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대 태국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6건, 미\$ 23억(2015년 말 기준) ○ 태국의 대한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1건, 미\$ 9천815만(2014년 말 기준)
교민	약 20,000명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 각 년도, 한국무역협회, 태국외무부, 태국 투자청 등

2 조세체계

태국의 주요세법은 조세법 1938이다. 재무장관은 조세법을 이행하는데 책임이 있다. 국세청장은 법의 필요한 행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왕령, 재무장관의 규정, 재무장관의 공시 그리고 조세위원회의 지령 및 규정이 법 규정을 지원한다.

태국은 무신고나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중한 제재를 갖고 소득세 자진신고를 위해 자기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의로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사기적 오류정보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세금납부 침해관점에서 구속되어질 수 있다.

태국 내에서 고용 또는 사업을 수행하여 얻는 과세소득을 얻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모든 개인은 이중과세협약이나 기타 국제적 또는 양자협약의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않는 한 태국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의 거주자는 동일한 해에 태국내로 가져오는 외국의 원천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조세법의 40장에 언급되어진 과세소득에 부과된다. 과세소득의 각각의 범주는 특별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계산, 총당금, 공제, 소득세율 및 원천세율을 정해놓은 바를 따라야 한다.

개인들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다양한 공제방법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표준등록공제, 고정 개인 과세연도 공제, 실제 발생한 비용 공제방법이 있다. 개인적 또는 자본적 성격의 지출, 소득세로부터 비과세되는 소득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개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 한다.

회사와 기타법적인 실체는 태국의 법이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던 간에 태국등록에서는 법인 또는 파트너 쉽으로 지칭되어진다. 태국의 법인 또는 파트너 쉽은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내에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실체는 태국내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과세연도는 일반적으로 연년에 의한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과세연도는 회계연도로 간주되어지는데 어떤 날이든지 종료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선택되어지면 이 기간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된다.

회사와 관련되어 분리된 소득세법은 태국 석유 가스 자산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발에 관련된 회사에 적용된다.

투자국으로부터 촉진 승인을 받은 회사는 운영초부터 상당기간동안 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태국은 광범위한 원천세제를 운영하는데 태국내와 국외로 송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는 태국내에서 넓은 폭의 상품(자본항목을 포함하여)과 용역에 과세되며 또한 상품과 용역의 수입에도 과세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7%이다. 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였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시한적 조치로서 1992년부터 7%로 인하한 이후 지속적으로 7%를 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은 2016년 **현행 7%로 동결**되었다. 특정 사업이 태국에서 부가가치세의 체계에서 벗어나지만 특별사업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금융과 유사 사업, 파이낸스, 증권 그리고 신용회사, 보험사, 팩토링, 그리고 부동산 사업이다. 특별사업세율(지방세를 고려한 후)은 일반적으로 총 수령액에 3.3%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세율은 2.72%이다.

많은 서류와 거래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증권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 0.1%에서 1% 사이이다. 단일세율로 1바트부터 200 바트가 증권마다 적용된다.

태국에서는 주나 지방 또는 시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 태국세율 요약

<법인세율(Corporate Income Tax)>

법 인	세 율(%)
고정사업장을 포함하여 태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태국법인과 외국법인	20 ¹⁾
석유와 가스 탐사/채굴 법인(석유소득세)	50
5백만 바트 미만의 납입자본금, 연매출 3천만 바트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으로	
· 순소득이 0~300,000 바트	면세
· 순소득이 300,001~1,000,000	15
· 순소득이 1,000,0001 이상	20
은행 : 세율은 국제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비율에만 적용됨	10
지역운영본부	10
승인된 석유거래회사로 년 2,000백만 바트 이상소득을 포함하는 규정을 충족한 특정한 수출입	10
투자국에서 승인한 회사	3년부터 8년까지 세율없음

* 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30%에서 2012년 23%, 2013년 20%와 같이 점차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1) 모든 기업, 법적 파트너십, 외국 기업 지사 : 원칙적으로 30%이나, '13년부터 '14년까지 일시적으로 20% 인하하였으며, 인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

<개인소득세율(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 연간소득(바트)	한계세율(%)	비 고
1 ~ 150,000	면제	
150,001 ~ 300,000	5%	총전 10%에서 인하
300,001 ~ 500,000	10%	
500,001 ~ 750,000	15%	총전 20%에서 인하
750,001 ~ 1,000,000	20%	
1,000,001 ~ 2,000,000	25%	총전 30%에서 인하
2,000,001 ~ 4,000,000	30%	
4,000,001 ~ 초과	35%	총전 37%에서 인하

* '13.1월부터 구간조정을 통해 세율 인하(세수감소효과 연간 250만바트 예상)

<부가가치세율(Value Added Tax)>

세 율	비 고
모든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7% 부과	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이나 '99. 4월부터 세부담 경감 및 경기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동세율을 7%인하한 이후 계속하여 연장

<통화>

1달러 = 35.25바트(태국은행의 평균매도율로 2016년 6월 기준)

1바트 = 0.03 달러

3 최근 세제개혁 ('16년 태국 세법 개정내용)

□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 가능

- 2016년 1월 1일 자 국왕령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아래 조건 충족 시 2016년 이전 세무신고분에 대한 세무감사를 받을 위험에서 해제될 수 있음
 -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이 500만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청 조사중인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허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허위로 비용을 신고한 적이 없어야 한다.
 -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등록을 해야한다.
 -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조세회피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

- 국왕령 제595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경감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2016 회계연도 법인세 전액 면제
 - 2017 회계연도 법인세 전액 감면
 - 과세 이익이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이 30만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10% 적용
 - 2018 회계연도는 당초의 세율을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초과 30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15% 적용
 - 과세 이익 300만 바트 초과 시는 법인세율 20% 적용
- (참고) 2015 회계연도는 한시적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과세 이익 30만 바트 이하는 법인세율 0% 적용
- 중소기업 적용 조건
- 자본금이 500만 바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3,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016년 1월1일에 공포된 국왕령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
 - 위 국왕령에 따라 세무감사가 면제된 법인이어야 한다.
- (시사점) 중소기업인지가 법인세 납부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절세 계획의 일환으로 가능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법인세율 경감

- 2016년 1월 22일 태국 국회는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0%으로 인하하는 입법안을 가결한 바 있으며, 이 세율의 변경은 현재 입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 (참고사항) 사업개발국의 온라인 신고 의무

- 태국 국세청은 종이 사용제한 및 세무행정 인력 절감을 위한 그린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세무신고를 적극 권장해오고 있습니다.

- 태국 사업개발국도 외국기업 포함 태국 내 모든 법인의 e-filing 의무화
 - 상업부 산하 법인의 설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개발국도 외국 기업을 포함한 태국 내 모든 법인은 매년 사업 개발국에 보고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신고서(SBC3)를 종이 대신 온라인에 의한 e-filing을 하도록 하는 고시문을 발표하였습니다.(2015년9월4일)
 - e-filing 등록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 및 비밀번호를 지정해 정해진 신청서를 사업개발국에 2015년9월3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현재까지도 e-filing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정 만기일까지 종이에 작성된 신고서(SBC3)와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법정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로 추가로 e-filing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함
 - 아직까지 e-filing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담당 직원을 통해 가능한 조속히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Ⅱ . 조세제도

1. 법인세 / 14
2. 개인소득세 / 37
3. 간접세와 기타 제세 / 45
4. 국제조세 / 54



1 법인세

가. 최근 주요 내용

□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인하된 법인세율 유지

- 2012년에 법인세율을 30%에서 23%로 인하하였고, 2013년 1월에 3%를 추가로 인하하였으며, 2016년에도 법인세율을 최대 20%로 유지할 예정임
 - 당초 최대 법인세율을 일시적으로 20%로 인하한 것이나, 인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5만 바트 이하의 경우 면세이며, 15만 초과~100만 바트 이하인 경우는 15%, 100만 바트 초과인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 외국기업 지사는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본 소득세율이 적용 되지만, 해외 본사로 송금되는 이익에는 10% 추가 과세함
-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위해 기업 합병시 법인세, 3.3%의 특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개요

태국에서 법인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다음과 같은 실체도 회사로 포함한다. 설립되지 않은 조인트벤처, 등록된 파트너십, 외국법에 의한 회사, 지점들, 설립체 또는 협의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태국의 법인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순소득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특정 등록 회사와 태국 내에서 지역운영본점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소된 율이 적용되는데 특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소득은 회계기간 동안 수행된 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수익을 고려하고 조세법규정에 허용된 모든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계산되어진다.

폭넓게 태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모든 법인이나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 실체들은 비록 법인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특별하게 법인세 의무로부터 제외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정의된 공공기부단체, 대사관, 유엔사무직원, 그리고 법에 의해 과세되는 특정산업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석유가스 산업으로 석유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어진다.

전형적으로, 도관회사는 태국세법에 의해서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등록된 파트너쉽과 유사회사가 법인세로서 과세된다. 예외가 뮤추얼펀드로 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있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받았다하더라도 유한책임을 부여하고 뮤추얼펀드의 소득은 도관체로 펀드의 개별소유자에게 과세되어진다.

다. 법인세율 개정 역사

지난 2015년 4월에 이어 9월 5일에 다시 태국 내각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율을 조정한 바 있는데, 이를 기회로 과거 2008년 이래로 수 차례 법인세율의 개정(변화)을 검토해 봄으로써 태국 정부의 과세 정책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경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올바른 법인세의 납부와 합법적인 조세 절감을 위해서 법인세율의 개정(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법인세율의 개정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태국 세법 상 법인세율의 적용은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일반법인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과세이익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태국의 중소기업(SME, Small & Medium Enterprise)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으로 분류된다.

- (1) 불입자본금이 5백만 바트 이하일 것
- (2) 연간 매출액이 3,00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율

과세 이익 (바트)	중소기업	일반법인
0 - 150,000	0%	30%
150,001 - 1,000,000	15%	30%
1,000,001 - 3,000,000	25%	30%
3,000,000 초과	30%	30%

나. 2012년도의 법인세율

과세 이익 (바트)	중소기업	일반법인
0 - 150,000	0%	23%
150,001 - 1,000,000	15%	23%
3,000,000 초과	23%	23%

다. 2013년과 2014년의 법인세율

과세 이익 (바트)	중소기업	일반법인
0 - 300,000	0%	20%
300,001 - 1,000,000	15%	20%
1,000,000 초과	20%	20%

(주) 2013년 4월 29일자 Royal Decree No. 564

라. 2015년도 및 이후의 법인세율

과세 이익 (바트)	중소기업	일반법인
0 - 300,000	0%	20%
300,001 - 3,000,000	15%	20%
3,000,000 초과	20%	20%

(주) 2015년 4월 30일자 Royal Decree No. 583

마. 2015년도 새로운 중소기업 법인세율

과세 이익 (바트)	중소기업	일반법인
0 - 300,000	0%	0%
300,001 - 3,000,000	15%	10%
3,000,000 초과	20%	10%

(주) 2015년 9월 5일자 태국 내각의 결정사항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향후2년간 적용하도록 되었다. 아직 법령화되지는 않았음

라. 주소지

태국내에서 주소지의 문제는 태국세법에서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회사들은, 법적실체의 기타형태를 포함하여, 태국의 법에 의해 등록되었거나 외국의 법에 의해서 등록되었거나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태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한 회사의 경우는 태국 내에서 그들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문구는 법인이 영구적 지점으로 설립되었거나 그 법인의 사무실이 외국에 위치하던 간에 태국 내에서 사업 계약으로부터 발행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종업원, 대표자,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둔 경우에 해당하며, 그러므로 태국 내에서 획득한 소득과 이익을 갖게 되면 그러한 회사나 파트너십은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과세가능 소득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은 태국 내 및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세금 목적의 법인 및 파트너십은 사기업 및 상장기업, 일반 등록기업, 파트너십, 합작투자, 기관 및 협회로 정의되며, 일반 형사 및 상법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 기업의 지사는 태국 내에서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 및 파트너십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수입이 규정되며, 태국의 내국세 코드에 의해서 부과된다. 과세 대상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 5년간 순 손실의 이전이 허용된다.
- 재고는 반드시 시장 가격 가치 또는 비용 가치 중 낮은 것으로 계산 한다.
- 고용주의 연금 또는 규정에 따른 기부는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
- 기증 또는 기부에 대한 공제 금액은 총 순이익의 4%까지 가능하다.
- 공공이익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한 기부는 2%까지 가능
- 교육 및 스포츠 단체에 대한 기부는 2%까지 허용
- 회계기간 종료일 순이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비용(예를 들어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보너스 등)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조세법 40장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모든 소득을 위해 잡동사니 하부 규정과 함께 법인에 의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한다.

□ 외국원천소득

태국법에 의해 설립된 태국 법인은 모든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태국 세법을 적용받는다.

□ 비과세 소득

수령한 배당은, 수많은 종류에서, 비과세되거나 부분적으로 비과세 된다.



바. 자본이득세

모든 실현된 이득은 그러한 이득을 정액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본 이득을 포함하여)으로서 정의된다.

태국에는 법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득으로, 자산을 취득할 목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하에 일반적인 소득으로 취급되어진다.

환율 변동에 따른 비실현 수입 및 손실은 과세 대상 순익 계산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회계 기간에 계정하거나 또는 자본화하여 상각할 수 있다.

사. 배당

태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주식)회사는 매년 정기 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를 회계년도 말 이후 12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주에 대한 통지는 주주 총회일 이전 최소한 7일 전(특별 주주총회의 경우는 14일 이전)에 주주총회에 대한 사실을 지방신문에 공고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주 전원에게 배달 확인이 가능한 등기 우편으로 최소 7일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상업부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Form SBC 3)되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이고 대표이사는 최고 20,000 바트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협의할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1. 이전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승인
2. 전년도의 회사 활동 사항을 이사회가 보고

3. 이사회 구성의 변경
4. 전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5. 배당에 대한 결정
7. 부속정관(Article of Association)에서 정한 기타 주요 사안 등
6.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 중 회사가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적자가 있을 경우 그 적자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배당을 할 수 없다. 참고로 태국은 중간 배당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정관(Article of Association)에 오직 주주총회에서만 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회의 결정으로 수시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을 하려면 회사의 등록자본금(registered capital)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총 배당금의 5% 이상을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으로 유보하여야 한다. 또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총 지급액의 10%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가능 소득이 되는데, 그 배당의 원천 및 배당을 받는 주주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20일자 Royal Decree No.538에 의하면, 배당 소득을 개인의 종합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한국의 분리 과세제도)

(가) 거주 납세자인 개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세법상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거주 납세자로 간주된다.



번호	배당의 원천	적용세율
1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 수입	개인소득세율 적용
2	대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시	원천징수세 10%
3	태국법인으로서 BOI투자 승인을 받은 법인, 사립학교 법인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4	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	원천징수세 10%
5	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	개인 소득세율 적용

* 배당 지급 시 10% 원천징수를 당한 거주납세자인 개인은 연말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배당금을 선택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세금 부담은 10%로 끝나게 된다.

(나) 비거주 납세자인 개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번호	배당의 원천	적용 세율
1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 수입	원천징수세 10%
2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서 BOI투자 승인을 받은 법인, 사립학교 법인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다) 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거주 납세자인 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번호	배당의 원천	적용세율
1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 수입	법인세율 적용
2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재 투자를 하는 경우	배당금액의 50%에 대해 법인세율 적용
3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 전후 3개월 이내 재투자되고, 그 투자금액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회사간 상호교환 지분은 제외)의 최소 25%이상인 경우	면 세
4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써 BOI투자 승인을 받은 법인, 사립학교 법인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번호	배당의 원천	적용세율
5	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수입	법인세율 적용
6	외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재 투자되고, 그 투자금액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회사간 상호교환 지분은 제외)의 최소 25% 이상이며, 법인세율이 15%이상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라) 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거주 납세자인 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번호	배당의 원천	적용세율
1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 수입	법인세율 적용
2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재 투자를 하는 경우	면 세
3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써 BOI투자 승인을 받은 법인, 사립학교 법인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4	외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수입	법인세율 적용
5	외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재 투자되고, 그 투자금액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회사간 상호교환 지분은 제외)의 최소 25% 이상이며, 법인세율이 15%이상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마) 비거주 외국 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번호	배당의 원천	적용 세율
1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부터 배당수입	원천징수세 10%
2	태국법인(상장 또는 비상장)으로서 BOI투자 승인을 받은 법인, 사립학교 법인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수입	면 세



아. 비과세 소득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승인된 투자국 기간 동안의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구성한다.

내국세법에 따라 세금 관련 벌금, 과징금 및 벌과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공제 및 비용

일반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목적 또는 태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통의 사업비용이라 함은 요건을 갖춘 대손 그리고 5%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감가상각비(항목의 성력에 따름)등은 공제된다. 전액공제는 태국은행의 규칙에 일치하여 계산되어진 대손상각 관련 충당금을 적용할 것을 시중은행에 의해 요구되어지게 된다.

접대 및 대표자의 비용은 회계 기간 동료일 기준 매출액 또는 불입 자본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공제 대상이 된다.

매출 또는 불입자본(바트)	공제 허용 비율(%)
최초 5백만	2.0
이후 15백만	1.0
이후 30백만	0.5
50백만 이상	0.3

특정지출은 특별히 법인세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지출은 적립금, 충당금(몇 예외있음), 개인적인 지출, 소득세, 벌과금, 순소금의 2%을 초과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그리고 총소득에 기초한 한도 초과한 접대비등이 있다.

태국에서는 기한기준에 맞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가산금(이자)과 벌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태국지점의 운영의 관점에서 독점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본사경비는 지점의 사업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다. 유일하게 본사에 귀속되는 비용(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 수도광열비와 문구비)는 지점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태국지점에 재청구되는 본사의 일반관리비용의 배분액이 있다면 곤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요구받는 공제가 태국법률에 따라 계산되어진 태국지점에 재청구되어지는 본사의 일반관리비임을 증명하는 본사감사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공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용인될 발생된 비용은 발생된 회계연도 내에 공제되며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가 아닌 비금전적 보상(non-cash remuner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태국 세무당국은 현금 지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deem)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직원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복지 혜택의 경우는 소득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즉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 후생 비용이 개인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여야 하며, 향후 세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 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같은 직위에 있는 직원 중 선별적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1) 사택 대여 공제 및 무료 대여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의 수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직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됩니다. 통상, 태국 세무당국은 직원이 사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직원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비보다 높게 평가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 주재원의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급여)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급여)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급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도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회사)은 VAT를 부가하여 매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해외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급여)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급여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5) 각종 회원권(membership)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위해 요금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급여)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급여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6) 의료 비용

회사가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특별히 개인소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시행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단체 건강(의료) 보험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을 모든 의료 시술을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8)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회사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으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출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비용(실비)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11)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개인의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전 근무지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방이나 해외로부터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만 국한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기간 중에 본인의 고향으로 오고 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대신 지불한다면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 손실

회계연도중에 법인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5년간 계속한 회계연도에 최대한 이월되어 모든 성격의 과세소득과 상계처리한다. 결손금 소급은 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그룹의 손실 완화를위한 총당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카. 연결/합병납세

태국에서는 연결납세가 없다. 각각의 회사는 재무상태에 대한 감사와 매년의 법인세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타. 감가상각총당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방법과 감가율은 인정된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용이 취득가치의 승인된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거나 그 자산의 취득가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감가율로 사용되어지는 것 보다 빨리 상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단 특정회계방법 그리고 감가율이 채택되면, 이것은 국세청장이 비용을 승인하지 않은 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규정된 감가율이 포함하는 것>

자 산 종 류	비 율(%)
공장 및 기계류	20
영구적 건물	5
일시적 건물	100
상각가능 자연자원	5
영업권, 공작권, 공식, 상표, 사업상 허가,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	
· 무기한	10
· 유기한인 권리로 잔존가능	100/년수
컴퓨터 장비 및 하드웨어	33.33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자산으로 감모되거나 감소되거나 감가되는 것으로 땅과 재고를 제외	20

왕령은 1999년 10월 23일에 제정으로 회사들이 감가율을 일반적으로 20% 한도까지 허가되었던 것을 40%까지 감가상각율을 허가하였다. 비율은 가치 감소방법에 사용되어야하며 자산의 잔존하는 잔여가치는 자산의 사용가능 생애의 최종 회계기간에 상각비용으로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만일 회계목적의 납세자의 장부계정에서 감가율이 규정된 과세상 감가상각율보다 작으면 모자라는 비율은 세금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왕령은 2002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에게 첫 번째 해의 추가적인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다.

자 산 종 류	비 율(%)
컴퓨터와 관련 부품	40
기계와 관련 부품	40
공장 건물	25

추가적인 감가상각을 위한 적합하려면 회사는 고정자산(토지 취득가액 제외)을 보유하여야 하며 2백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종업원이 200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장이 적격한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작성한 법률 유효일 이후 3년간에 해당한다.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투자국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원가에 관해서 승인한 회사로 이용가능하다.

회계기간에 취득한 자산들은 할당된 자체의 감가상각충당금을 갖을 수 있다.

감가상각가능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이익과 손실은 과세가능/공제가능하다. 그것들은 자산의 판매액과 자산의 상각 후 가치 사이의 차이에 의하여 계산되어진다.

파. 감모 상각

특정 다른 자본화된 사업지출비용은, 무형자산과 같은, 그것들의 기대사용년수 동안 소득세 목적으로 감모상각 할 수 있다.

하. 이자

이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태국 조세당국에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과세소득 분류는 이자로 고려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채권, 예금, 무담보채권, 어음, 증권을 수반하던간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대출이자의 부분으로 통제하는 석유소득세로 그와 같은 법에 의해 원천 징수된 세금공제 후 잔여액 또는 어음매각가격과 보상가치 사이의 차액 또는 법인이나 파트너십에 의해 발행된 증권 또는 다른 법인과 첫 번째 보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증권, 본질에서 이자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한다, 이익 또는 다른 대가로 대출연장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증권을 수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의무로 인한 청구권으로부터 대가를 포함 한다”



거. 세율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기업, 법적 파트너십, 외국 기업 지사
 - : 원칙적으로 30%이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20%이하하였으며, 인하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순이익에 부과되는 일반 법인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 국제운송사업 분야로 외국인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 또는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 : 승객 운송의 경우 태국 내에서 운송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수수료 및 기타이익에 대해 비용 공제 전 3% 부과
- 화물 운송의 경우 태국 내외를 불문하고 태국으로의 화물 운송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수수료 및 기타 이익에 대해 비용 공제 전 3%를 부과

태국 재무부 훈령에 의해 「공공자선단체 또는 연구소로 인정된 기관 및 단체」는 모든 종류의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외 「태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수입에 대해 경비 공제 전 수입의 종류에 따라 2%에서 1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회원사의 회비, 선물 또는 기부의 방식으로 받은 금전 또는 자산은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은 각 회계기간 종료일 15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간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회계 기간은 12개월이며, 납세 신고는 회계감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들은 연간 법인세의 50%를 회계 기간 8개월째 마지막 날 반기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반기 납세 신고액이 실제 납부액의 25%이상 미납될 경우 차액에 대해 20%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상장기업, 상업은행, 금융기관 또는 재무부 내국 세국 규정에서 명기한 특정 법인체」는 6개월의 회계 기간 동안의 실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납세 신고는 내국세 국장이 승인한 회계사가 검토한 재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율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 율
0~300,000	면 세
300,001~1,000,000	15%
1,000,001 이상	20%

자료 : 태국 재무부

중소기업 : 자본금이 5백만 바트 미만이며, 연매출이 3천만 바트를 넘지 않는 기업이며, 자본금이 5백만 바트 이상인 경우 법인세율은 20%임

세법 개정 내용을 왕령으로 발표하는데, 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30%에서 2012년 23%, 2013년 20%와 같이 점차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왔다. 2015년 9월 5일 내각의 결정사항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이 5백만 바트 미만이며, 연매출이 3천만 바트를 넘지 않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0%로 낮추도록 하였다.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기존대로 20%를 유지하였다.

너. 연말 결산과 연말 세무조정

태국의 회계년도(accounting year)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결산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국 세법은 기업의 경우, 결산일 이후 15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와 함께 연말 세무신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에는 익년 5월 29일까지 윤달이 없는 해는 5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된다.



이 기한은 선진국과 달리 세무서에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세무서로부터 “불성실 납세자(not good taxpayer)”로 분류되어 향후에 있을 세무감사시에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태국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가 연말 결산 후에 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사는 정기 주주 총회 (AGM,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를 결산일 이후 4개월 (익년 4월 30일)이내에 개최하여 태국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서를 승인
- 2)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받은 결산서를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의 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
- 3)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연말 세무조정 계산서와 감사 받은 결산서를 세무서에 제출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은 당연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상의 금고형도 가능하다.

2004(2547)년 발표된 국세청 조세통칙(Tax Ruling) Gor Khor 0706/1476에 따르면 결산일 이후 150일 이내에 연말 세무조정 계산서는 제출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법 상 가산세나 가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세법 해석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 및 결산서의 준비가 늦어졌다고 해서 연말세무조정 신고를 나중에 하거나 하면 세법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말 세무조정신고(ATR, Annual Tax Return)은 법인의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하고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세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정(adjustment)이라는 의미는 회계 상 이익과 세법 상 과세 소득이 차이가 나므로 회계결산 결과 산출된 이익에서 세법 상 인정 또는 불인정하는 항목을 가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기 주주총회)

참고로 주주총회(AGM)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도 역시 태국의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주주 총회에서 전년도 결산서에 대한 승인과 당해년도의 감사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 1) 주총일 7일 전에 지방(local)신문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
- 2) 위 신문공고 및 수신이 확인 가능한 등기로 모든 주주에게 우편 발송 (returned receipt registered mail)
- 3) 주주총회 결과 주총 회의록 작성(태국어)

주주 총회는 전 회계년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12월 결산인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개최가 되어야 하며 소집통지는 4월 22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위 모든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 20,000밧 이하의 벌금(fine)이 부과된다.

(외부 회계 감사)

태국은 상장, 비상장과 무관하게 모든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법인이라 함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office) 및 영구적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까지도 태국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Accounting Act)에 따르면 「자본금이 500만 밧, 총자산이 3,000만 밧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신에 세무서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편이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법인세 반기 법인세 조정 신고

태국의 법인세 신고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과세 년도의 반(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반기 세무조정 신고(half-year income tax returns)을 해야 하며, 둘째로는 과세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말 세무조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세무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반기 세무조정 신고 및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한다. 물론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한 것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태국 세법 상 반기 세무조정 신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Section 67 bis에 규정되어 있다.

- 상장법인,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반기(6개월 간)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 그 외에 모든 법인은 연간 기준으로 추정한 순이익의 50%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태국의 일반법인은 당해년도 추정 순이익을 예측하여 중간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로 반기 세무조정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태국 세법 Section 67 ter에 규정된 아래의 사항이다.

“반기 세무조정 신고를 위해 연간 순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without a reasonable excuse) 실제 연간 순이익과 비교하여 25%

이상 차이(적계)가 나는 경우에는 회사는 반기 세무조정 시에 과소 납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 (penalty)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25%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가산금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정직하고 타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점이 될 것이다.

회사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국세청장(Director-General)의 지침(Instruction No. Paw 50/2537, 1994년 4월)을 따르는 방법이다.

“회사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하여 반기 세무조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의 50% 이상을 신고를 한다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년도의 이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만 납부를 하면 반기 세무조정 신고 상 세무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소득세

가. 최근 주요 내용

- 2013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소득세율 인하 적용
- 2013년 12월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5%로 낮추고 소득구간도 당초 5개에서 8개로 세분화함
- 과세 대상은 연간 180일 이상을 태국 내에 거주한 개인으로, 비거주자는 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함

나. 서문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태국원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태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소득이 태국 내·외에서 지급 되었는지를 불문한다.

또한, 개인 거주자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을 수취한 연도에 태국으로 지급되거나 송금된 경우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기타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다. 거주

연간 합하여 최소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비록 거주자 여부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 확정된다 하더라도 세무상 태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태국원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태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 소득세

태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태국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주자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을 수취한 연도에 태국에 송금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가능 소득은 태국 내의 근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화폐성, 비화폐성 소득을 포함한다. 이 소득은 소득 수취자가 거주자 지위임을 불문하고, 지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를 불문한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개인이 수취한 아래의 소득은 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 자유 전문직업 : 법률, 의학, 기계, 건축, 회계, 예술 등
- 계약 작업(계약자가 주요 자료를 제공한다)
- 사업, 상업, 농업, 산업, 운송 등 여타 활동

태국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 수취자가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된다. 거주자는 소득을 수취한 해에 그 소득이 태국으로 지급되거나 송금되는 경우 국외 소재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다.

태국 소재 은행예금(요구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연간 20,000바트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태국 소재 은행에 1년 이상 예치하는 고정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모든 유형의 고정예금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소득 합산 금액이 3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상인 개인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의 다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이와 같은 이자소득은 15%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개인의 과세가능 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비거주자는 태국 내 근로, 자산보유, 사업수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소득의 지급지가 태국 내·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마. 양도소득세

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양도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처럼 과세된다. 그러나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허가된 중개인에 의해 양도된 경우)나 뮤추얼펀드의 투자단위로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의 태국 외 원천소득은 소득을 수취한 해에 태국에 지급되거나 송금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바. 배당

일반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태국에서 과세된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거주자는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태국에서 10% 원천 징수된 모든 배당소득을 과세가능 소득에서 제외할 것이다.

비거주자는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사. 근로소득

세법典에는 급여, 임금, 일당, 상여, 장려금, 선물, 연금, 임대소득, 고용주가 제공하는 무상 주택의 현금가치, 피고용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고용주가

지불한 경우의 금액 또는 용역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자산·이익 형태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능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지급되는 경우 개인이 수취하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기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지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42조에 의거 제한적인 범위내의 소득은 과세가능 소득에서 특별히 제외된다. 제외되는 소득에는 규정된 요건과 최대한도 이내의 태국 소재 은행 저축이나 고정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사업상 여행경비의 환급, 사업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얻는 소득이 아닌 자산소득, 가족생계비, 상속, 유증, 증여 및 장학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Ministerial Regulation 126조에 의거 과세가능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특별 분류되는 소득이 있다.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양도가 허가된 중개인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이나 뮤추얼펀드 투자단위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태국내 동산양도 소득은 이득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자. 공제

소득별 표준 공제 세율

내국세 코드	소득 종류	표준공제 세율
40(1)및(2)	고용 및 서비스 소득	40%, 최대 6만바트 미초과
40(3)	저작권 소득	상동
40(4)	자산매각에 따른 자본, 이자, 배당 소득	-
40(5)	임대소득	자산 임대 형태에 따라 10%에서 30%
	(1) 건 물	30%
	(2) 농 지	20%
	(3) 기타토지	15%
	(4) 차 량	30%
	(5) 기 타	10%
40(6)	전문인 소득	의료행위60%, 기타 30%
40(7)	계약에 따른 소득	실비 혹은 70%
40(8)	기타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	실비 혹은 사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65%에서 85%

태국법에는 과세가능소득의 다양한 분류에 따른 다양한 공제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표준공제가 적용되는 소득도 있고, 소득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공제되는 소득도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60,000바트 한도 내에서 개인 총소득의 40%가 비용으로 간주되어 표준공제 된다. 특별규정에 의거 개인납세자의 생명보험료, 모기지 이자, 자선기부, 공인된 준비기금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약업무, 사업, 상업 등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의 65%~85%는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의료전문 소득자는 60%의 표준공제가 적용된다. 다른 모든 자유 전문 소득자는 과세가능소득의 30% 표준공제가 적용된다. 모든 경우에 납세자는 실제 원가와 비용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실제 원가와 비용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원가와 비용의 공제 대신 표준공제가 허용된다. 표준공제 범위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소득의 10%~30%이다.

차. 인적 공제와 세금 환급

세법상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가 인정된다.

인적공제	THB
납세자	30,000
납세자의 배우자	30,000
전일교육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는 25세 이하의 자녀 또는 양자녀(최대 3자녀 한도)	15,000 (자녀 1인당)
부모 부양 공제	15,000(각자)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녀수당은 자녀들이 3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생명보험료, 준비기금 납부, 주거목적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선기부에 대하여도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태국 내 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2,000바트의 교육비공제가 인정된다.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는 납세자가 태국에서 연간 180일 이하 거주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와 배우자의 부모는 각자 30,000바트의 부모 부양공제를 받는다. 부모 부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소득자 이어야 하고, 국세청장 고시 요건을 충족하며,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카. 세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연간소득	세율(%)	과세액(바트)	누진세액(바트)
1 ~ 150,000	0	0	0
150,001 ~ 300,000	5	7,500	7,500
300,001 ~ 500,000	10	20,000	27,500
500,001 ~ 750,000	15	37,500	65,000
750,001 ~ 1,000,000	20	50,000	115,000
1,000,001 ~ 2,000,000	25	250,000	365,000
2,000,001 ~ 4,000,000	30	600,000	965,000
4,000,000 ~	35	-	-

타. 세무행정

직전년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는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소득에 대한 미납부 세금은 신고일자 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법률, 의학, 공학, 건축, 회계, 예술, 계약업무 등 전문적 지식과 사업, 상업 등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사람은 1월에서 6월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매년 9월까지 반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 소득세 신고시 연간 공제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이때 납부되는 세액은 연말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 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기까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한하여 배우자가 희망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되면 누적 납부세액이 낮아지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과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세무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 납세자는 세무신고서와 원천세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음의 사람은 태국을 출국하기 전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 출국시점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있는 외국인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한 외국회사를 위하여 세금 납부 의무 있는 외국인
- 외국 유명 연예인

3 간접세와 기타 제세

가. 최근 주요 내용

- 2016년 역시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7%로 동결
 - 부가가치세는 1992년에 세율 10%로 도입되었지만 경제계의 부정적인 반응 등으로 즉시 한시적으로 7%로 인하함
 - 이 후 시한조치가 만료될 때 마다 동 조치의 연장이 반복되어 현재도 부가가치세율은 7%로 유지됨
- 2015년 5월 상속세 도입법안 통과
 - 태국 국회는 상속세(1억바트 이상 자산 상속시 10% 부과, 단 부모나 자식이 상속인인 경우 5%만 부과) 도입 법안을 통과시킴

나. 사회안전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사회 안전기금을 분담해야 한다. 고용인을 위한 기금의 분담금은 고용주와 정부가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분담금의 현재 비율은 최대 월 750바트까지 종업원의 급여의 5%이다. 분담금은 고용주에 의해 급여에서 공제되고 매달 기금으로 송금된다.

다. 부가가치세/특수 사업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태국 내에서 폭 넓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는 생산의 각 단계에 부과되며 부가가치세가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단계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고려되어진 일반 소비자의 소비세이다.

과세물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인 경우 7%에서 0%까지 부과된다. 영세율은 수출품에 적용된다. 특정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세 0% 대상 물품 및 서비스

- 수출 상품
- 서비스 수출과 같이 태국 내 비 거주인이 사용하는 유가 서비스 또는 서비스 결과물
- 태국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체 그리고 태국 법인체에 0%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소속된 외국 법인체가 수행하는 국제항공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
- 외국 차관 또는 지원 프로젝트 하에서 태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UN, 대사관 또는 등록 영사관에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보세 창고에 운송된 물품

○ 부가세 면제 대상 물품 및 서비스

- 연간 60만 바트 미만의 무역업자
- 공업용 규모로 캔, 용기 또는 포장되어 제조된 식품을 제외한 농산품
- 공업용 규모로 캔, 용기 또는 포장되어 제조된 식품을 제외한 가금 또는 가금제품
- 비료
- 물고기 및 동물 사료
- 식물 및 동물 병충해 또는 질병 방지 또는 박멸용 약품 및 화학제품
- 전문직 서비스
- 지정된 연구 또는 기술 서비스



- 고정자산 임대
- 내국 운송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또는 동물원 서비스
- 우표, 정미 등

현재의 부가가치세는 7%이다. 이것은 특별한 왕실 법령하의 임시 기간 동안 감소한 세율이다. 신규개업 또는 2005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그러한 사업의 과세표준이 1,800,000바트를 초과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사업자들은 매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모든 부가가치세는 다음달 15일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매달 어떤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불구하고 모든 등록된 과세사업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매월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해야한다.

매입세액이 과다하면 환급을 받거나 다음 달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적용 신청할 수 있다.

□ 특수 사업세

은행, 금융, 보험 및 증권업과 같은 특정사업은 특수사업세가 부과된다. 특수사업세 납부 대상 기업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부가세를 지급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매월 납세 신고시 특수 사업세가 납부 되어야 하며, 특수 사업세 적용대상 기업은 추가로 10%의 도시세가 부과된다. 특수 사업세는 매월 총 수령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부과된다.

사 업	세금 기반	세율
은행, 금융 및 유사사업	이자, 할인,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 외환수익	3.0
금융, 증권, 신용토지금융	이자, 할인,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 외환수익	3.0
생명보험	이자, 서비스요금 및 기타요금	2.5
전당포업	이자, 요금, 기간만료자산 판매보수	2.5
부동산업	총 수령액	0.1
보안시장 내 보안장비 판매업	총 수령액	0.1 (면제)

라. 관세

관세는 일정 범주의 수출품과 수입품에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종량관세, 종가관세, 혼합관세 모두 부과된다. 혼합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결합한 것이다(보다 높은 것을 적용한다). 부과세율은 몇몇 사치품목 - 담배(60%), 알콜, 차 등 - 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20% 범위이고 대개 수입관세의 계산을 위한 수입품의 가치는 도착항 인도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과 수출품의 가치인 본선인도조건에 기초한다.

관세 측정은 거래가치는 대개 실제 지불되거나 지불될 가격을 사용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법 규정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는 조정 적용된다.

관세 과세표준이 수입품의 거래가격으로부터 결정될 수 없다면, 관세 과세표준은 연속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거래 가치를 포함한 다섯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수출 관세는 주로 생가죽과 목재를 포함하는 원자재에 대해 부과된다.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수입관세에 더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해외 무역거래는 다양한 허가 협약과 교환 통제 법규들의 조항이 적용된다. 수출품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다.



마. 소비세

소비세는 종량관세, 종가관세, 혼합관세를 과세표준으로 원자재에 따라 부과된다. 혼합관세는 종량관세와 종가관세의 결합이다(보다 높은 것을 적용한다). 소비세는 국내생산 되거나 수입된 상품의 다음 범주에 적용된다.

- 휘발유와 생산물
- 탄산수와 음료수(알콜 및 비알콜)
- 특정종류의 전자제품
- 특정유리와 크리스털 상품
- 자동차
- 요트
- 향수, 화장품
- 기타 카펫, 대리석, 배터리
- 경마장과 같은 유흥장소
- 알콜
- 양초, 담배
- 카드, 화투

생산품이 공장에서 선적되었을 때 제조된 상품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수입된 재화의 경우 소비세는 수입품에 부과된다. 담배와 카드를 제외한 위의 모든 상품에 소비세에 더하여 소비세의 10%인 내국세가 부과된다.

바. 인지세

위임장, 신용장, 수표, 선화증권, 서비스 계약서와 같이 태국 내국세 코드에 명기된 특정 서류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소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지세가 일반적으로 명목상 요율이지만 서류에 소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6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서종류	인지세율
부동산 임대계약	전체 임대계약금액의 0.1%
주식양도 계약	매매가 또는 액면가 중에서 큰 금액의 0.1%
리스 계약	리스 계약 총액의 0.1%
하도급 계약	총 계약금액의 0.1%
대출 계약	대출금액의 0.05%(10,000THB 한도)

자료 : Revenue Department (2014.5)

사. 재산세

태국의 재산세는 12.5%로 주택 및 토지세, 지방개발세로 분류된다. 주택 및 토지세는 상업적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 빌딩,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지방당국이 평가한 자산 가치에 따라 다양하다. 소유주가 직원 거주용, 특산용 및 농작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그 범위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아래의 경우 집과 토지세가 면세되는 경우이다.

- 왕실이 보유한 궁궐
- 정부가 소유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빌딩
-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공병원 및 학교
- 종교빌딩
- 1년 이상 공실인 빌딩
- 개인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

건물과 토지가 위치한 지역 내 해당 지방정부에 매년 2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후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불성실 벌금이 200바트이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벌금은 30일 이내 미납시 2.5%, 두 달 이내 미납시 5%, 석달이내 미납시 7.5% 그리고 6달 이내 미납시 10%이며, 그 이후 체납할 경우 지방 정부가 몰수하여 처분 후 세금을 변제할 권리가 있다.



아. 물품세

현재 물품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국내 생산 석유 및 기름제품, 물을 제외한 비알콜성 음료, 미네랄 워터 및 우유, 에어컨, 전구, 크리스탈, 10인승 이하의 자동차, 요트 및 유람선, 향수, 화장품류와 특정 유흥업종이다. 또한 증류주, 맥주 및 담배에는 특별 물품세가 부과된다.

자. 상속세

태국 국회는 2015년 5월 22일 상속세(1억바트 이상 자산 상속시 10% 부과, 단 부모나 자식이 상속인인 경우 5%만 부과)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태국 내 생전 증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중 토지의 명의 변경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증가한 1,290건에 이르렀다.

차. 증여세

상관습에 따라서 또는 특별한 기념일(예를 들면 생일, 결혼)을 맞이하여 주는 선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카. 가산세 등

태국 세법은 세목 별로 신고 납부기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법 상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surcharge), 가산금(penalty) 및 벌금(fine)이 부과되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비용(손금 불산입)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세법 외에도 회사가 다른 법률 위반으로 부담하는 범칙금 등도 세무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가산세 (Interest Surcharge)

가산세라 함은 지연 납부 또는 미납 세액에 일정이자율을 가산하는 형태로써 시장이자율과 무관하며 월 1.5%을 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산세는 가산금(penalty)와 달리 세무공무원(감사인)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단지 최대 금액은 미납세액(tax shortfal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capped)되어 있다.

세금의 유형	가산세율
개인소득세, 법인세(중간예납은 제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미납 세금의 월 1.5%, 단 미납세금을 초과하지 않음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20%
재 산 세	납부기한을 초과 4개월 이내는 최대 10%, 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경매 처분할 수 있음
지 방 세	미납세액의 10%에서 24%까지
간 판 세	미납세금의 10%
사회보장기금	지연 납부액(매월15일)의 월2%

2) 가산금 (Penalty)

가산금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의무 불성실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부과한다. 세무조사에 의한 추정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조세 포탈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세무조사에 협조적일 경우에는 가산금 적용 비율을 세무 공무원(감사인)의 재량으로 낮출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가산금 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세금의 유형	가산세율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결정된 세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최대 200%
부가가치세 및 특정사업세	미신고 세액의 최대 200%
	부정확한 신고의 경우에 미납세금의 최대 100%
인지세	미신고 금액의 최소 125%에서 최대 600%

3) 벌금 (Fine)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000바트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4 국제조세

가. 최근 주요 내용

- 2015년 5월 태국정부 내각은 국세법에 특정 이전가격 규정을 추가하는 이전가격 법률 입법예고안을 승인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전가격 조정 평가에 대한 권한 부여
태국 국세청(TRD)는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관계거래의 과세 소득 및 대응 조정에 대한 총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경영 또는 통제의 측면에서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특수 관계가 성립됩니다.
 2. 대응조정에 의한 세금 환급 청구의 제한 법령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한 특수관계거래 관련 세금을 초과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기한 내에 조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통지 수취 후 60일
 -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3년
 3. 제출자료 요구사항 및 과태료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 말, 즉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거래명세서를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소유, 경영 또는 통제의 측면에서 관련 특수관계자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 및 (2)특수관계 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필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THB 400,000(US\$ 12,00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서언

태국은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태국 국세청(TRD)는 법인들이나 개인들의 사업에 대하여 세무신고가 맞는지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법 조항은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사업을 위해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을 이익 획득과 무관하거나 또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줄이는 어떠한 구조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조작되었거나 가공의 비용은 불공제된다.

다양한 벌칙과 추징, 구속은 조세를 포탈한 법인과 임원들에게 부과될 수 있다.

다. 이전가격

본사, 자매회사, 지점이나 관계된 회사와 거래가 있는 사업들은 구조와 법에 정한 회계 감사를 받은 관계 회사와의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한다. 세법 조항 아래서, 태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재화나 서비스, 금전 대여 등의 거래에 있어 시장 가격보다 적게 받았다면, 시장가격만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세청은 이익 창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 공제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Departmental Instruction에서 언급되었다. 이 지침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 태국 세법에 의해 국세청이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이나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실히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보상을 받지 않았거나 시장 가격보다 적은 보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이 지침은 태국내 기업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지침의 시장가격의 정의는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한 “독립기업”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의 이전, 용역의 제공, 자금의 대여에 있어 시장 가격은 거래일에 특수관계 없는 기업들간의 동일한 자산, 용역, 자금의 거래에서 부과되는 금액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기업들”은 경영, 지배, 자본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회사들을 말한다. 이 정의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연결된 기업(특수관계 기업)”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은 또한 다음의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 가격법;
- 원가 가산법; 또는
- 기타 방법들. 만약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기업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OECD에서 채택된 이익에 근거한 방법인 이익분할법과 거래순이익율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위의 가격 결정 방법들의 적용은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거래 가격 또는 이익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의 독립기업들 간의 거래 가격 또는 이익의 비교에 의한다.

또한, 이 지침은 광범위한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이전가격 조사를 할 때,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이전가격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할 것을 규정한다. 이 지침은 이 서류들이 거래가 시작됨과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 장소에 보관되어야 할 것을 규정한다.

태국의 이전가격 규정의 시행에 따라, 태국의 기업들은 특수관계 기업들과의 거래 가격이 용인된 방법들 중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이전가격의 결정 과정이 적절한 문서로 표시되어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시간의 소모와 함께 이전가격 조사를 받게 된다.



<p>1. TP법률제정 /가이드라인</p>	<p>태국의 이전가격 규칙은 세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이 규정 내에서 조작한 이전가격으로 과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세무 당국은 다른 나라와의 상호합의 뿐만 아니라 표준회계 No.37과 47 및 세법 규정 제65조 제2항 4호 및 7호, 제70조를 적용하여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또한 국세청은 2002년 5월 내부 지침 No. Paw 113/2545를 통해 법인세-시장가격에 따라 이전 가격 결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정상거래가격을 적용하기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음</p>
<p>2. 세금 환급시 제출서류</p>	<p>이전가격 관련 문서 필요하지 않음</p>
<p>3. 태국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이전 가격 감사</p>	<p>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 이후 이전가격 관련 다른 감사 없음</p>
<p>4. 이전가격 사전합의(APA)</p>	<p>내부 지침 No. Paw 113/2545(제5장)에 따르면, 상호합의는 유효하나 태국 국세청은 관행에 따라 일방적 상호합의용 응용 프로그램은 수용하지 않음 양자 간 협정 조약은 상호 합의 절차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음 태국 국세청은 양자 상호합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책자를 발간하였음</p>
<p>5. 상호합의절차</p>	<p>다국적 기업에 의해 조작된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내부 지침 No. Paw 113/2545에 따라야 하며,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는 국세청에서 허용된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통해 산출한 시장가격을 따라야 함</p>
<p>6. 정상가격 산출방법</p>	<p>시장가격이란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펀드 자산의 판매, 서비스 제공, 대출 등을 말하며,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격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 재판매 가격 방법 - 원가가산 방법 - 만약 상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OECD에 의해 채택된 이익분할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수용된 순이익률 방법이 있음</p>
<p>7. 국제관리수수료</p>	<p>관리수수료 비용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출한 시장 가격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 원천 징수는 DTA가 고려되어야 함</p>
<p>8. 이전가격 처벌</p>	<p>이전 가격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없으나 일반 기업 세금처벌 제도가 적용되며, 최대 100% 추가 법인세 가산금 및 한달에 1.5%씩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음</p>

라. 고정사업장

태국 내국법상 고정사업장

태국 세법 조항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나 파트너십이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있고, 태국에서 수입이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업이나 파트너십은 법인세 납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은 태국 지점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태국 지점이 이 이익을 본사에 송금할 때, 지점수익송금세가 태국 지점의 세후 이익에 대해 10% 과세된다.

따라서 송금 후 태국 지점의 이익에 대한 총 세금은 37%로, 해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송금하는 태국 기업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통상 태국에서 사업 경영 측면에서 태국 기업들이 더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고 인식된다. 태국 기업은, 태국 지점이 해외 본사와 동일한 개체로 인정됨으로 인해 태국 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배분된 경영료, 사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태국 과세당국에 의해 해석된 이중과세 협약 상 고정사업장

태국은 많은 국가들과 폭넓은 이중과세협약을 맺고 있다. 이중과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보통 OECD 모델을 따른다. 따라서, 태국 국세청은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른 고정 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고정사업장의 태국 내 이익과 해외 본사에 송금한 이익에 대해 태국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총 37%가 된다.



마. 과소자본

태국은 과소자본에 대해 규정이 없다.

바. CFC 조항

태국은 CFC 조항이 없다.

Ⅲ. 국세행정 및 절차

1. 개 요 / 62
2. 세금 신고 및 납부 / 63
3. 태국의 세무조사 / 65
4. 납세불복 제도 / 66
5. 기 타 / 67
6. 이중 과세 방지 협약 / 68
- 가. 최근 주요 내용 / 68



1 개요

태국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세금의 종류별로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self-assessment) 하는 방식과 과세 관청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 방법이 있으나 태국의 경우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세무관청에서 볼 때 불성실 신고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tax re-assessment)에 착수하게 되며, 그 결과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각 세금 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말 결산 기준) 태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rd.go.th/publish/54410.0.html>)에 가면 매월 신고 납부 기한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만일에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신고기한을 연장을 해 줍니다.

세금의 종류	신고 양식	신고 주기
급여	PND 1	익월 7 일까지
사회보장 기금	SPS 1-10	익월 15 일까지
원천 징수세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의 지급)	PND 2	익월 7 일까지
원천 징수세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 이외의 지급)	PND 3	
원천 징수세 (법인에게 지급)	PND 53	
원천 징수세 (과실 송금)	PND 54	
부가가치세 (국내 거래)	PP 30	익월 15 일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의 경우)	PP 36	익월 7 일까지
특수 사업세 (Specific Business Tax)	PT 40	익월 15 일까지
반기 법인세	PND 51	8 월 말까지
연말 법인세	PND 50	익년 5 월말까지
감사보고서 완료 및 주주총회	주총결의서	익년 4 월 말까지
주주명부 (상업부 DBD)	주주명부	5 월 14 일까지
감사보고서 (상업부 DBD)	SBC 3	주총일 이후 1 개월
간판세	PP 1	매년 3 월말까지
재산세	PRD 2	매년 2 월말 까지
연말 개인 소득세	PND 90, PND 91	익년 3 월말까지



2 세금 신고 및 납부

가. 세금 신고

모든 법인은 법인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은 자기세금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없다.

모든 법인은 회계기간으로서 임의적 12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채택되면 국세청장의 승인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는 매년도 두 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에 관련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차법인세신고서(서명과 감사를 받아야 함)는 회계연도 종료후 15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반년도 법인세신고는 회계기간 첫 번째 6개월이 종료 후 2달내에 제출 되어야한다. 타종류의 법인은 연간 순이익을 추정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반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반년도의 납부할 세액과 소득 지불자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년도말 신고세액 계산시 공제된다.

국세청은 신고서와 첨부한 회계감사서류의 일치성과 정확성을 조사한다. 국세청은 공제나 다른 문제에 대하여 적정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층 조사나 감사를 위해 랜덤하게 법인을 선택할 수 있다.

태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이 소유한 법인, 외국법인의 지점은 태국인이 소유하는 법인과 같은 동일한 서류제출 요구되는 신고를 해야 한다.

고의의 과소신고와 탈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는 2년 후 통상적으로 결론이 난다.

<세금등록번호>

태국내에서 등록된 모든 법인은 조세목적의 번호를 신청해야한다. 그 번호는 모든 세금신고에 인용된다. 원천에 대한 최종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태국 원천소득을 수령한 비거주자 법인은 세금등록번호를 보유할 의무가 없다.

나. 인터넷을 통한 세금신고 및 납부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종이 사용 및 세무행정 인력의 절감을 위한 그린 정책(green policy)의 일환으로 온라인 세무신고 (Tax Return E-filing)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3월에 온라인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4년 1월까지 모든 세무신고 마감일을 8일 더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그 이후 다시 혜택 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로는 일선 세무서(Branch office)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email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온라인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시간 및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세무신고 외에 ATM, 인터넷 뱅킹, 텔레폰 뱅킹, 모바일 뱅킹, Tax Smart Card 등을 통한 온라인 세금납부(e-payment)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한 세무신고 신청서” (Por Or 01)를 작성 및 출력한 후 다른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행히도 신청서는 태국어로만 되어 있으므로 태국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세무신고관련 신청서 등의 영문 번역본은 (http://rdserver.rd.go.th/publish/en/eng_form.ht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 내에 있는 온라인 세무신고 부서 (Electronic Tax Management Office)에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 인터넷 세무신고 합의서(Agreement for Filing Tax Returns via the internet)
- 2)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자 ID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등록증(Affidavit) 및 대표자의 여권 사본에 서명 및 회사 직인 날인한 서류
-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은 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 4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 관할 사무소로부터 User ID과 Password를 받게 되고 온라인 세무신고가 가능한 시점을 통보 받습니다.

온라인 세무신고의 승인을 받은 후 온라인 세금납부(E-payment)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 태국의 세무조사



태국의 세무신고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진신고 (self-assessment)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세액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필요 시 조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2년 전까지 소급하여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를 요구하여 세무 조사를 행할 권한이 있는데, 탈세의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나 세금 환급신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조사할 권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및 상법 상 세무당국은 **최고 10년까지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과거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해 두어야 합니다.

태국 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 조사관의 청문 (태국 세법 Section 88/3)
세무 신고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후 세무조사관에 의해 신고서류의 리뷰가 행해지고 전화와 문서로 납세자 측에 질의가 이루어진다. 조사관의 지적에 대해 반론을 계속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소환장이 발송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 소환장에 의한 본격 조사 (태국 세법 Section 19)
소환장이 발행된 경우, 그 납세자에 관한 모든 세목마다 세무조사가 행해진다. 조사 완료 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시정통지가 발행되고 벌금을 포함한 세액을 납부한다. 이러한 처분에 납득이 안 되는 경우 이의신청, 세무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 (태국 세법 Section 88/4)
납세자의 세금 환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세무 조사관의 조사를 받은 후 절차가 진행된다.

4 납세불복 제도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부과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정통지서(Re-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리 위원회(Board of Appeal)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 불복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재판소에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다.

불복신청에 의해 세금 지불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통지 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하는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복 신청 결과 추정 세금이 줄어 들 경우에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 타

5.1 태국 국세청으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는 방법

태국서 사업을 하다 보면 태국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세법상에서 쉽게 해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두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태국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나 의견서를 통하여 원하는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회신을 얻기 위해서는 문서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를 룰링(Ruling) 이라고 하는데 한국 세법상 통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칙이라는 것은 국세청 법무팀에서 개별 사안별로 심의 후에 제시하는 법적 의견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국세청의 의견일 뿐이지 법률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태국 국세청으로부터 통칙을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국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조세 부담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가. 국세와 지방세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세청 (Revenue Department)이 관리 및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사업세, 인지세 외에 물품세와 관세가 국세에 해당한다. 물품세는 Excise Department에서 관리·징수를 하고, 관세는 관세청 (Customs Department)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지방세에는 지방의 토지국이 관할하는 토지·가옥세, 지방 개발세 및 간판세가 있으나 그 세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나.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이 해당된다.

다. 태국의 조세법

한국의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세금의 종류(세목)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태국은 “세법 (Revenue Code)”에 5가지 세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왕령, 장관령, 국세청 고시 및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관세법과 국가간 조세협약이 있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약

가. 최근 주요 내용

- 2013년 11월 방콕에서 태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개최
- 제2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키로 합의
- 김덕중 국세청장은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요청함



태국은 「법인체 및 개인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세금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협약을 외국과 맺고 있다. 또한 석유 소득세 및 지방개발세(재산세)는 일부 조약에 의해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특별사업세 및 도시세는 협약에 의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태국의 조세협약은 일반적으로 태국 내국세 코드에 의한 내국법하에서 보다는 세금에 대한 호의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국가 거주자들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태국 내 영구적인 설립체가 아닌 경우 협약국 거주자가 태국 내에서 획득한 사업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따라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외국 법인체에게 지급하는 수입금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공제되거나 면제된다. 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재 60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유럽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러시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 아시아, 태평양 :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홍콩, 타지키스탄, 미얀마
- 미주 : 캐나다, 미국, 칠레
- 아프리카, 중동 :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터키, 바레인, 오만, 세이셸

나. 한 -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발효

협정 내용에 따라 2008년 1.1일부터 발생하는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다. 개정추진 사유 및 경과

정부는 한-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1977. 8. 12)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 및 통상환경을 반영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협상의 개정을 추진했다.

2차에 걸친 양국간 실무 협상을 통해 총29개 조항과 의정서에 대해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2005년 7월) 했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쳐 2006년11월 19일 협정(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식 서명했다. 공식 서명 후, 협정발효를 위한 양국 정부 내 국내절차 완료 통보가 2007년06월29일 상호 이루어짐으로써 동 날짜로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조약 제1856호로 관보(제16542호5, 2007년7월9일자 전자관보)에 공포했다.

라. 주요 개정내용

정부는 조세 조약 체결이후, 우리 기업이 태국에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등 경제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해 현지 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이 강한 현행 조약을 투자가의 거주지 국 과세권이 균형 있게 확대되면서도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투자 소득에 대한 제한 세율을 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우리기업의 대(對) 태국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소득 발생 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

구 분	과 거	개 정
배 당	15~20%	10%
이 자	금융기관수취이자10% 기타 : 국내법상세율	금융기관수취이자와신용판매이자10%, 기타15%
사용료	15%	저작권 : 5% 특허권, 상표권, 의장, 도면, 비밀공식·공정 : 10% 산업·상업·학술장비, 산업·상업·학술정보 : 15%



포트폴리오투자(25% 이하 지분소유)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투자자의 거주지 국 과세권을 확보한다.

- (과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한다.
- (개정) 포트폴리오 투자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법인 주식을 25%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현행과 같이 소득 발생지 국에서 과세한다.

우리기업의 對태국 직접 투자 활성화와 과실의 국내 송금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조약 발효 후 5년간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제도(TSC)를 허용한다. 5년 후 추가 연장여부는 양국 과세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우리기업이 태국에서 이자 배당사용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 세금 계산 시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소득 발생지국에서 이자소득이 면세 되는 기관에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하여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 한국투자공사의 이자소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
- 이자면세기관 : (한(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태국), 수출입은행, 저축은행, 주택은행등

제3국 거주자의 조세 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한다. 태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 받는 역외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혜택이 배제된다. 국제 해운 운수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약과 같이 소득 발생지국에서 50%를 면세하되 최혜국 조항을 신설한다. 태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더



높은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한다.

마. 기대효과

한-태 이중과세 방지 협정발효는 양국 간의 투자와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IV. 부 록

한·태국 조세조약 / 74



한 · 태국 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7. 06.29]

제 1 조 【인적범위】 [2007.06.29]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 2 조 【대상조세】 [2007.06.29]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 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 및
 - 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태국에서는
 - 1) 소득세 및
 - 2) 석유소득세 (이하 “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또한 협약의 서명일 이후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현행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2007.06.29]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고, 생물이건 비생물이건 간에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된 지역으로 대한

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내 수역과 영해, 영해 구역을 확장한 기타 지역 및 해저와 그러한 기타 지역의 하층토를 의미한다.

- 나. “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태국왕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국내 수역, 영해 및 기타 근해 지역을 포함하는 태국 왕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 다. “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서 발효한 조세법에 따라 과세 가능한 단위로서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
- 라.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 마.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바.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 또는 태국의 조세를 말한다.
- 사.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 2) 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 자. 양 체약국과 관련된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및
 -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단체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적용 당시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 4 조 【거주자】 [2007.06.29]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장소, 관리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 조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2007.06.29]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 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건축현장, 건설·설치·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 나. 양 계약국 중 한 국의 어느 거주자가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다른 쪽 계약국에서 동일한 혹은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어느 12개월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4. 이 조 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선전, 정보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다른 쪽 계약국의 한 기업을 위하여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러한 개인이 다음과 같을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 가. 그러한 개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 개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 안에서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나. 판매와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어느 한쪽 계약국 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6. 기업이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계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한 인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조건이 독립적 기업 간에 만들어진 관계와 다른 상업적이고 금융적 관계에서 기업과 대리인 사이에 만들어 졌거나 부과된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다른 쪽 계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2007.06.29]

1.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계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계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건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2007.06.29]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 사업장의 경영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고정사업장의 실제 순수익을 근거하고 고정사업장의 총 수령액의 어느 정도 적당한 퍼센트를 근거로 주장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체약국이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소득 또는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2007.06.29]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어느 한쪽 계약국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이윤은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에 대해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만큼 경감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혹은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소득 또는 이윤을 포함한다.
 - 가. 장비, 유인 그리고 보급이 완벽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 나. 선체용선계약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시 임대
 - 다.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관리 및 임대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이 일어나는 경우, 관리나 임대는 국제운수상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 조 【특수관계기업】 [2007.06.29]

1. 가.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의 기업의 경영권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 나. 동일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계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두 기업 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계약국이 동 계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계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외 같이 포함되는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계약국은 다른 쪽 계약국의 조세법에 따라 그러한 이윤에 대한 동 다른 쪽 계약국의 과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2007.06.29]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발기인주 또는 소득 및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어떤 것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 밖의 이윤 처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과되는 세금은 그러한 이윤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2007.06.29]

1.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계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이자가 어떠한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하여)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었을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 나. 이자가 관련 없는 인물 간의 매매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고 어떠한 장비, 재화나 용역의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 의한 신용 매매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인 경우, 이자총액의 10퍼센트
 -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쪽 계약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어느 한쪽 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 성격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 1) 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 3) 한국산업은행
 - 4) 한국투자공사
 - 5)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 나. 태국의 경우
 - 1) 태국은행
 - 2) 태국수출입은행
 - 3) 정부구제은행
 - 4) 정부주택은행
 - 5)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된 서신에 열거되고 합의된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른 금융기관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여부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이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회사채는 소득 및 이들 정부증권?채권?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연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이유가 무엇이던지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2007.06.29]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 가. 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 나. 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다. 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가. 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다.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계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계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다른 쪽 계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령 조직체이거나 동 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어느 한쪽 계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2007.06.29]

1.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계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쪽 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자본 주식, 또는 파트너십, 신탁이나 재산의 이자,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특히
 - 가.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
 - 나. 이 항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주요하게”라 함은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재산에 의해 소유된 모든 자산의 총 가치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그러한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5.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서 25퍼센트 이상의 참여로 대표되는 제4항에 언급된 주식 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2007.06.29]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만 과세한다.
 - 가. 그가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체류가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 한다.

다.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로부터 지급되고, 회계연도 내에 미화 12,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 또는 타이 바트화를 넘을 경우, 그렇게 얻어진 보수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2007.06.29]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 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2007.06.2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 [2007.06.29]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연예인, 체육인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방문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거주자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공공 기금에 의해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해당소득은 연예인, 체육인 및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8조 【연금】 [2007.06.29]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내의 원천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9조 【정부용역】 [2007.06.29]

1. 가.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어느 한쪽 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어느 한쪽 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또한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가. 한국의 경우,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때때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
 - 나. 태국의 경우,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때때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태국은행, 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 기관

제20조 【교수 및 교사】 [2007.06.29]

1. 다른 쪽 계약국 최초방문에 양 계약국 중 하나의 거주자이며 다른 쪽 계약국의 정부 또는 다른 쪽 계약국에 위치한 종합대학 또는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종합대학이나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주요한 목적으로 동 다른 쪽 계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다른 쪽 계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 기관이나 그 밖의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개인 용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다른 쪽 계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한다.
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해진다면 이러한 연구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 【학생 및 훈련생】 [2007.06.29]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2007.06.29]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각 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3조 【이중과세회피방법】 [2007.06.29]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태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태국의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금액은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의 목적상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이 수정되어 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되었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총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그러한 배당총액이 그 배당의 10퍼센트인 경우
- 나. 그러한 이자총액이 이자의 10퍼센트인 경우
- 다. 사용료의 경우

- 1) 제12조 제3항의 가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의 금액
- 2) 제12조 제3항의 나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 3) 제12조 제3항의 다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3. 태국의 법 규정에 따라(이 항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얻어진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되는 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전에 소득 또는 이익의 그러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태국에서 납부되는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목적상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이 수정되어 태국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그 밖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태국 내 원천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되었을 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총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그러한 배당 총액이 10퍼센트인 배당의 경우
- 나. 그러한 이자 총액이 10퍼센트인 이자의 경우
- 다. 사용료의 경우

- 1) 제12조 제3항 가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의 금액
- 2) 제12조 제3항 나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 3) 제12조 제3항 다목에 규정된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5. 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계약국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어느 한쪽 계약국 거주자는 그 항에 언급된 소득으로서 어느 한쪽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고 다음을 고려한 후 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의 이익을 언급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조 제2항과 제4항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 개인이나 여타 다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맺어온 합의가 있었는 지 여부

- 나.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어떠한 개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사기?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6. 이 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날짜로부터 첫 5년간만 적용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2항과 제4항의 적용 기간의 연장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무차별】 [2007.06.29]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다른 쪽 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일체의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서 다른 유사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인 조세를 의미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2007.06.29]

1. 어떤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일체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2007.06.29]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상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 나. 어느 한쪽 계약국 또는 다른 쪽 계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2007.06.2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계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가. 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
-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나. 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 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3. 1974년 8월 26일 방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종료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 【종료】 [2007.06.29]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계약국은 비준서가 서명된 역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한쪽 계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납세분
-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나. 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 2)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통보된 해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6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1조와 관련하여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액(회사, 조합 또는 기타 단체 또는 기타 인에 대한 환불, 변제, 기부, 세액공제 또는 공제를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액의 경감 또는 차감계산을 고려한 후)이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된 회사의 자본주식 또는 신탁 또는 기타 단체의 모든 이자에 부과될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적다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성 있게 소유 또는 지배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신탁 또는 기타단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이 투자 사업이 아닌 것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 또는 사업의 활발한 운영으로부터 독점적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의 90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이 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협약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개인이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저장시설과 관련된 창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협약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인 제3국과의 결정된 합의 또는 협약에서 태국이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의 경감비율 또는 면세에 합의할 경우 그렇게 경감된 비율은 상호합의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이 협약 제11조 제4항과 관련하여 “이자”라 함은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 조세법에 따라 대출된 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그 밖의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6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태국편 2nd edition)

국세청

태국 해외세정연구팀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서 철 호
국세조사관 장 호 수
국세조사관 이 상 재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